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3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22.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28,014,690원, 지방교육세 1,932,260원, 농어촌특별세 1,383,520원, 가산세 1,807,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19. 3. 11. ○○시 C 외 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 지분씩 매수하여 취득하고, 원고 A은 2019. 11. 21.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 원고들은 2019. 2. 21. D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토지와 공장에서 석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을 받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3. 5.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원고 A)	215,000,000	8,250,380	696,030	347,750	9,294,160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원고 B)	215,000,000	8,250,380	696,030	347,750	9,294,160
이 사건 건물 (원고 A)	460,200,000	11,811,700	564,510	705,630	13,081,910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지는 등의 상황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에서도 소형 기계를 구입하여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외부 원인이 있었던 점, 소량이나마 시제품 생산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와 그 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석제품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9년 1, 2기에는 건설회사, 건축사 사무소 등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사건 공장의 신축을 위한 매입액이 발생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석제품 제조와 관련한 매입·매출 내역이 전혀 없다(원고들도 매입내역 중 석제품 제조업과 관련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석제품 제조업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갑제2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일시적으로 소량의 시제품을 생산한 사실은 있으나, 상시적인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사업'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일시적인 소량의 시제품 생산만으로는 사업활동으로 볼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석제품 제조업을 하는 데 어떤 장애가 되었다는 것인지, 그 영향이 잦아들어 일상활동이 회복된 후에 원고들이 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4) 원고 B은 그 명의로 석재 매매업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가 2022. 11. 8.과 2023. 3. 14. 2차례에 걸쳐 출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위 석재 매매업을 위하여 재고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석제품 제조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5)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들이 석제품 제조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5. 결 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4

(별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끝.